



한옥정책 **브리프** hanok policy brief

한옥학교의 운영현황 및 지원제도

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 임현성 연구원, 김희정 연구원

요약

- 전국의 한옥학교는 총 25개이며, 2011년 6개 학교에서 656명의 졸업생, 283명의 취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매년 1,000명 이상이 졸업하는 것으로 추정)
- 한옥학교는 개인, 법인,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운영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특정 교육시설로 인가받을 수 있고,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설립 및 운영 지원 가능
-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일반인 체험과정으로 프로그램 다변화, 교육장으로 지자체 공공시설 활용,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 확보, 산·학·관·연과의 협력 등 교육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

정책제안

- 한옥학교 교과과정 기준마련, 전문분야에 대한 특성화 교육 등 한옥학교 인증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지원정책 필요
- 한옥 수리 및 중간관리 기능자 자격 제도화, 경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인력풀 구축 등 관련 자격제도 준비를 통한 인력 처우 개선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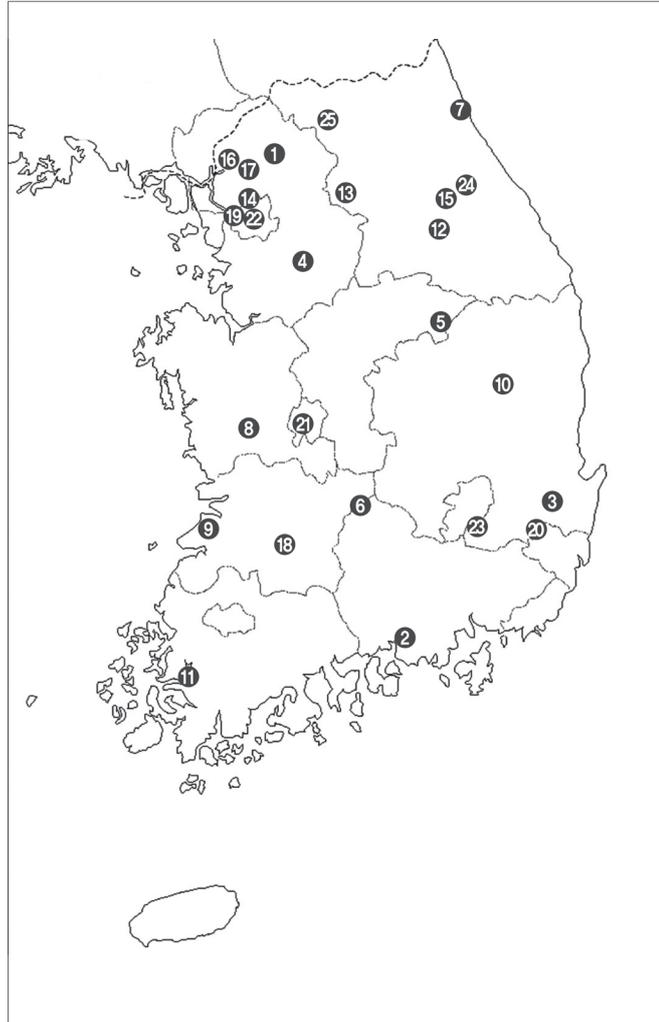
1. 한옥학교 현황 및 설립 동향

■ 한옥학교는 총 25개, 전국에 고르게 분포

- 2012년 12월 현재 전국의 한옥학교는 총 25개(서울 3개, 경기도 4개, 강원도 6개, 대전 1개, 충북 1개, 충남 1개, 울산 1개, 경북 3개, 경남 2개, 전북 2개, 전남 1개)

표 1. 전국의 한옥학교 목록 (*가나다 순)

번호	학교명(위치)
1	가평 한옥평생교육원(경기도 가평군)
2	경남한옥학교 (경상남도 고성군)
3	경주한옥학교 (경상북도 경주시)
4	다물장원 한옥학교 (경기도 이천시)
5	단양한옥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6	덕유산 한옥학교 (경상남도 거창군)
7	돌집흙집학교 (강원도 양양군)
8	부여한옥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9	새만금목조건축학원 (전라북도 부안군)
10	안동한옥학교 (경상북도 안동시)
11	영암한옥학교 (전라남도 영암군)
12	전통건축직업전문학교 (강원도 평창군)
13	지용한옥학교 (강원도 홍천군)
14	청원산방 소목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15	통나무흙구들학교 (강원도 평창군)
16	파주 동이 한옥학교 (경기도 파주시)
17	파주전통문화예술학교 (경기도 파주시)
18	한국목조건축직업학교 (전라북도 임실군)
19	한국문화재보호재단문화유산교육원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	한국전통건축학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21	한밭한옥직업전문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22	한옥문화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23	한옥아카데미 (경상북도 청도군)
24	한옥학원 (강원도 평창군)
25	화천한옥학교 (강원도 화천군)



■ 최근 한옥학교의 급격한 증가

- 1995년 이후 목조건축 중심의 민간 학교들이 건립되고 그 중 4개 학교를 중심으로 한옥 관련 과정이 개설되어 본격적인 한옥학교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한옥학교의 수가 크게 증가



- 매년 1,000명 이상이 졸업하고, 그 중 약 40%가 취업하는 것으로 추정
 - 2012년 11월 현재, 11개 학교에 701명의 교육생이 재학 중
 - 6개 학교의 집계 결과 2011년에 총 656명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283명(43%)의 학생이 취업

2. 운영 주체 및 관련 제도

■ 다양한 운영 형태

- 개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운영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특정 교육시설로 인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으로 인가

■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 지자체 차원의 한옥 지원 사업
 -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해당 지자체로 교육생의 주민등록지를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인구늘리기 및 한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옥학교 설립
예) 화천한옥학교, 단양한옥학교
-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훈련’
 -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기 위한 자격요건
 -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배움카드제훈련¹⁾’ 제도를 통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 운영부담을 줄이고 교육생 모집에 용이
예) 전통건축직업전문학교, 한옥아카데미, 새만금목조건축학원,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
- 중앙정부 차원의 인력양성 및 교육지원 사업
 -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 1도시 1특성화 지원사업’
예) 화천한옥학교, ‘노후의 행복설계, 한옥 집짓기’

¹⁾ 실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개설한 후,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 시에 훈련비용을 1년에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교육 수요자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
예) 통나무흙구들학교, '내 손으로 만드는 황토구들방'
- 산림청의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중 목재체험교실 프로그램
예) 부여한옥학교
- 국토교통부의 '청소년 한옥건축 체험캠프' 사업
예) 지용한옥학교·강원대학교

3. 한옥학교 운영지원 방안

■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일반인 체험과정으로 프로그램 다변화

• 전문인력 양성과정

- 대목수 양성과정, 소목수 양성과정, 관리자 양성과정 등으로 다변화 가능
- 대목수 양성과정 이론교육은 한옥의 구조, 재료, 설계, 역사, 시공, 법규, 설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실습교육은 공구사용법부터 수장에 이르는 시공 공정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대목수 양성과정은 대개 교육기간은 10~12주, 교육시간은 400~480시간

- 소목수 양성과정은 '창호 만들기', '기본아자문 만들기', '서안 만들기', '세살문 탁자 만들기', '사방탁자 만들기' 등 창호 및 가구 등을 직접 제작하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
- 도서, 도면, 판서 등 다양한 자체교재 이외의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 필요

※ 현재 교재로 사용되는 도서들 :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2011), 목조(한국건축대계 5)(장기인, 2005), 한옥 짓는 법(한옥시공 길라잡이)(김종남, 2011), 실전 예제로 배우는 스케치업8 완전정복(신명철, 2011), 건축목공(박완선 외, 2012), 목재 가공 실기(한국산업인력공단, 2008),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2007) 등

• 일반인 체험과정

- '한옥모형 조립과정', '주말한옥건축체험' 등 한옥 모형을 제작해보거나 '기둥 세우기' 등 한옥 시공의 일부 공정 체험 가능. 개인, 가족, 단체가 1일~1박2일의 짧은 시간 동안 참여

■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교육장 및 필요 장비 확보

- 교육장으로 지역 내 폐교를 활용하거나, 지자체 소유의 부지 및 건물을 저리로 임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신축하는 등의 방안 마련
 - 폐교를 활용 시 이를 장기 임대하거나 손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개선, 지자체 소유의 부지 및 건물을 활용 시 우선 임대자격 및 교육장 활용 권한 부여, 기숙



표 2. 한옥학교의 운영 형태 및 인가 조건

교육 시설명	관련 법령	관할 부처	인가 조건						
평생 교육 시설	평생교육법	교육부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습 시설·설비, 자료실, 관리실 보유,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 <table border="1"> <tr> <td>등록신청서</td> <td>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개설예정일 포함</td> </tr> </table>	등록신청서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개설예정일 포함				
			등록신청서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개설예정일 포함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설치신고 <table border="1"> <tr> <td>신고서</td> <td>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등</td> </tr> <tr> <td>운영규칙</td> <td>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등</td> </tr> <tr> <td>관련 서류</td> <td>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td> </tr> </table>	신고서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등	운영규칙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등	관련 서류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신고서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등					
운영규칙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등								
관련 서류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 지정직업훈련시설 : 해당 요건을 갖추어 지정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table border="1"> <tr> <td>인력</td> <td>해당 직종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td> </tr> <tr> <td>시설</td> <td>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시설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td> </tr> <tr> <td>경력</td> <td>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춘 것</td> </tr> </table>	인력	해당 직종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시설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시설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경력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춘 것			
인력	해당 직종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시설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시설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경력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춘 것								
· 학원설립·운영신청서에 원칙(院則)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table border="1"> <tr> <td>학원설립·운영신청서</td> <td>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 및 교육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과 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 등</td> </tr> <tr> <td>원칙(院則)</td> <td>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등</td> </tr> <tr> <td>관련 서류</td> <td>학원 위치도, 학원 시설평면도,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td> </tr> </table>	학원설립·운영신청서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 및 교육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과 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 등	원칙(院則)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서류	학원 위치도, 학원 시설평면도,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원설립·운영신청서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 및 교육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과 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 등								
원칙(院則)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서류	학원 위치도, 학원 시설평면도,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평생 직업 교육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table border="1"> <tr> <td>지정신청서</td> <td>신청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설립연도,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문인력 양성분야(주요 과정명 3개 이내) 등</td> </tr> <tr> <td>관련 서류</td> <td>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목재교육 관련 교육·연구 실적</td> </tr> </table>	지정신청서	신청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설립연도,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문인력 양성분야(주요 과정명 3개 이내) 등	관련 서류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목재교육 관련 교육·연구 실적		
지정신청서	신청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설립연도,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문인력 양성분야(주요 과정명 3개 이내) 등								
관련 서류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목재교육 관련 교육·연구 실적								
목재 전문 인력 양성 기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사 신축 시 저리 용자를 통한 금융지원 고려 가능

- 강의장소는 이론강의실과 실습장(치목장)을 기본으로 마련하되, 컴퓨터실, 강당 또는 세미나실, 설계실습실 등 부가적인 강의장과 자료실, 전시관 등을 고려
 - 이론강의실은 수용인원 30인 이하의 규모가 일반적이며, 실습장은 실내·실외 여부에 따라 30인~200인까지 다양

그림1. 한옥학교의 교육장 및 강의장소



폐교를 활용한 학교



개인 소유 부지를 활용한 학교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신축한 학교



이론강의실



실내실습장



실외치목장

-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대체로 3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운영이 필수
 - 특히,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등을 통해 전국에서 수강생들이 몰리는 경우, 기숙사 운영은 필수적이며,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치목 및 조립 등의 실습을 위해 치목용 대형장비와 수공구인 소형장비를 보유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공용 대형장비로는 엔진톱(전기체인톱), 전기대패, 원형톱, 직쏘, 홈대패, 루터(휴대용), 그라인더, 전동드릴, 공기압축기, 크레인, 샌더 등이 있고, 개인용 소형장비로는 손대패, 먹통, 자(줄자, 곡자, 이동식직각자, 연귀자 등), 정추(다림추), 끌, 망치, 솥돌, 손톱 등이 있으며, 일부 고가의 공용장비의 경우, 제도적 지원 검토 필요

■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 확보

- 해당 한옥학교의 운영형태에 따라 자격증을 보유한 교수진 확보가 필요
 -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를 확보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 이상과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등이 1인 이상 필요
- 대목 분야의 교수진 이외에도 한옥소목, 목조건축, 신한옥, 전통구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초빙할 필요
 - 학교당 평균 교수진은 4.3명이며, 학교 당 전임 교수진은 2.4명(12개 학교 평균)



-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의 확보를 위해 강사료 보조 등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목·변와·구들 등 전문가가 부족한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산·학·관·연과의 협력을 통한 공생 전략 마련

• 한옥 설계 및 시공업체와의 협력

- 관련 사업 컨소시엄 시행 등을 위해 한옥학교와 사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거나 협력약정을 통한 유사 기관 간 협력의 형태 가능

※ 해당 한옥학교 자체가 특정 사업체의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사업체에 한옥 설계 및 시공을 의뢰한 건축주를 대상으로 한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지역대학과의 학점 및 교육생 교류 등 교육 교류

-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건축캠프 개최, MOU 체결, 한옥학교 간 연합회 또는 학회 등을 결성하여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

※ 청도 한옥아카데미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점교류를 통해 신청학생에게 1학기 16학점을 부여하고 등록금을 교육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화천한옥학교는 한림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고, 지용한옥학교는 강원대학교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 과정'을 운영 중

※ 사단법인 국제온돌학회, 한국현대한옥학회는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황토방 전통온돌 기술가 과정'을 개설

- 군부대, 지자체 등 지역 사회와 연계

- 군부대, 인근마을로부터 한옥의 설치 또는 기술교육을 신청 받아 교육생의 실습 기회를 확보하고 실습결과물을 활용

- 지역과 한옥학교를 연계하는 공조체계는 인구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지역 군부대 내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부대 내 시설공사를 실시(지용한옥학교)하거나 인근 마을의 정자를 신축(평창 한옥학원), 지역 내 불우이웃 집수리 참여(청도 한옥아카데미) 가능

※ 화천한옥학교의 경우 지역에 총 42동의 한옥을 신축하고 화천에 정착한 졸업생은 26명에 달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

• 한옥학교 간 인력 교류

- 인근의 한옥학교와 상호 연계를 통해 교육을 협조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에서 교수진 확보가 가능

예) 평창 한옥학원의 대목과정과 인근의 구들체험학교(장평)의 구들과정을 상호 연계

4. 제도 보완 방안

■ 한옥학교 인증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

- 한옥학교 교과과정의 기준마련을 통한 인력의 전반적 수준 제고
 - 한옥분야에 특화된 중간관리자 및 실무전문가 육성, 건축주 교육 등 다양한 교과과정별 교육내용의 국가적 기준 마련 및 교재 개발 필요
 - 무자격 학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공통 교과과정의 인증 도입 필요
- 전문분야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 및 학교 간 협력 기반 확보
 - 분야별(설계, 시공, 설비, 수리 등), 공정별(소목, 번와, 구들 등), 유형별(기존 한옥보수, 신한옥 건축 등) 한옥교육 특성화 방안 마련 및 인증
 - 캐드(CAD), 스케치업(SKETCH-UP), BIM 등 한옥 시공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교과과정의 개발 및 보급 필요

■ 한옥 기능자 관련 자격제도 정비를 통한 인력 처우개선

- 한옥 수리 및 중간관리 기능자 자격 제도화
 - 문화재 분야와는 별개로 한옥의 신축 및 증·개축을 담당할 우수한 한옥 인력의 양성과 관리를 위해 별도 자격 제도 마련 필요
- 경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풀 구축을 통한 한옥 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 확대 및 한옥 전문인력 처우 개선
 - 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실시하여 경력에 따른 보수 기준 차별화 및 재교육 지원 필요
 - 자격과 경력관리를 통해 구축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한옥마을조성사업 등에 우선 활용방안 검토
 - 현 대목에 대한 보수기준을 현실화하고, 한옥 건축공정의 합리화 및 일위대가의 구체화 필요

문의 | hjkim@auri.re.kr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제해성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www.hanokdb.kr

